

ISC-

이 사 회 규 정



제·개·폐	일 자	시 행 일	승인권자	비 고
제정	2017-03-01	2017-03-01	대표이사	
관 련 사 규				

ISC-	이 사 회 규 정	
제정: 2017.03.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 3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②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 중 1 인의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이사회 담당부서 및 서기를 두어 회의준비, 회의관계서류 및 일지 등을 기록 보존하게 한다.

제 5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인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ISC-	이 사 회 규 정	
제정: 2017.03.01		
개정:		

제 3 장 회 의

제 7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의 1 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 10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을 따른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10 조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질서유지)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ISC-	이 사 회 규 정	
제정: 2017.03.01		
개정:		

제 4 장 결의사항

제 12 조(결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법정준비금의 감소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4) 준비금의 자본전입

(5) 주식의 소각

(6) 사채의 발행

(7) 기타 중요한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3.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2) 이사의 겸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3)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ISC-	이 사 회 규 정	
제정: 2017.03.01		
개정:		
4. 기타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3 조(상정안의 제출) ①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 상정안을 이사회일 3 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접수된 상정 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 안 제출 이사에게 참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상정일자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제출 이사와 협의, 의장에게 품의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ISC-	이 사 회 규 정	
제정: 2017.03.01		
개정:		

제 5 장 위 임

제 14 조(위임)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 15 조(이사회 장소)

이사회 개최 장소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6 조(감사 및 관계자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7 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17 조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8 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ISC-	이 사 회 규 정	
제정: 2017.03.01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